

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

(의안번호 제66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28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29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7 총무위원회 상정 · 심사보류

2. 제정사유

-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· 연구 및 여성관리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· 자문 등을 전담할 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운용 설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 · 자문의 기능(안 제2조)
나.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내지 제9조)
다. 위원회운영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(안 제10조)
라. 여성발전기금조성의 재원(안 제15조)
마.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바.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(안 제17조 내지 제19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77회 고성군의회(임시회)시 상정 되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보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고,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및 기금출연 방안 등 충분한 심의를 위해 부결 처리한 안전임.

-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.
- 현재 경상남도에서 동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남도와 거제시, 함안군, 하동군 등임.

☆여성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 제정현황☆

시·군	조례형태				시·군	조례형태			
	2개조례	위원회조례만	통합조례	기금조례제정		2개조례	위원회조례만	통합조례	기금조례제정
창원시	미제정			-	의령군	미제정			-
마산시	미제정			-	함안군			○	○
진주시		○		-	창녕군	미제정			-
진해시			○	○	고성군	미제정		-	-
통영시		○		-	남해군	미제정		-	-
사천시		○		-	하동군	○			○
김해시	미제정			-	산청군	미제정			-
밀양시	미제정			-	함양군	미제정			-
거제시			○	○	거창군	미제정			-
양산시	미제정				합천군	미제정			-
경남도			○	○					

- 표와 같이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법률상으로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법률위임근거가 없으며, 경상남도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지침에 의하면 전 시·군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권장사항 외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사료됨.
- 안 제4조의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인원(15명)의 적정여부와 안 제15조에서 기금을 5년간 3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와 출연재원과 그 출연방법은 무엇인지, 또한 현재 설치·관리하고 있는 기금(노인복지기금 외 3종)이 6억 2,136만원('99년도말 기준)으로서 추가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과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3조(기금의 설치운영)의 규정에는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시 기금설치가 가능하다가 명시되어 있으며,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5조(여성자원활용센터의 설치·운영)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(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)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·운영 하도록 하고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
- 답 :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음.
- 문 : 여성발전위원회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
- 답 : 기금 목표액은 3억원이며,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 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임.
- 문 : 법 제34조에 명시된 대로 여성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 하다고 보는데
- 답 : 경남도에서 지침이 시달되고,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와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임.
- 문 : 노인복지기금도 2001년까지 매년 6천만원 출연하는데 열악한 군 재정 으로 기금만 설치·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
- 답 : 기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여성복지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는 기금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임.
- 문 : 본 조례는 권장사항으로서 여성발전위원회기금설치조례가 통과되면 인센티브로서 우리 군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
- 답 : 가능함.

6. 토 론

- 찬성의견 :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함.
- 반대의견
 -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남도의 권장사항임으로 고성군의 재정 여건이나 도내 3개 시·군에서만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기상 조임.
 - 의원 간담회 등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고성군의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임.

7. 심사결과 : 2000. 12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보류